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281,542,239 | 38,446,267 |
| 일반회계 | 1,137,430,661 | 34,122,920 |
| 특별회계 | 144,111,578 | 4,323,347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37,383,933 | 4,121,518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7,233,275 | 1,116,998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100,150,658 | 3,004,520 |
| 기타특별회계 | 6,727,645 | 201,829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2,165,326 | 64,960 |
|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| 1,549,397 | 46,482 |
|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| 423,204 | 12,696 |
|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| 2,149,347 | 64,480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| 22,540 | 676 |
| 지하수특별회계 | 417,831 | 12,535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525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